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19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4. 6.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9. 2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양부남의원	2024. 7. 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 9. 2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양부남의원	2024. 7. 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9. 2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김태년의원	2024. 10. 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11. 22.)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1. 27.)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단서).
- 나.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1조제6호의4).
-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 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제4항).
-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호 본문).
- 바. 조사·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9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하 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 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61조제1호 본문 중 "제31조 각 호의"를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제25조(임용의 기준)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	
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	
공자, <u>저소득층</u> 등에 대한 임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을 실시할 수 있다.	<u>.</u>
제27조(신규임용) ① (생 략)	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
	<u> </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	
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
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1. ~ 7. (생략)
-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9. ~ 13. (생 략)
- ③ 삭 제
- ④ ~ ⑥ (생 략)
-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 저 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 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

1. ~ 7. (현행과 같음)
8
괴하기스기러
<u>과학기술직렬</u>
9. ~ 1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 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 · 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 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 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 ⑤ (생 략)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3. (생 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후단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1. ~ 6의3. (현행과 같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ᅟ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

7. · 8. (생략)

-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략)
 -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 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 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u>다. 벌금</u>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 8. (현행과 같음)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 행과 같음)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 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 1. (생략)
-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u>기술</u> 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 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 ③ ④ (생 략)
-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 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 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 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 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 의 시·군·구의 임용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 군·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

1. (현행과 같음)
2
과학
기술직렬 5급
③・④ (현행과 같음)
5
•

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u>기술직</u> <u>렬 6급</u> 이하 공무원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 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 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 ·군·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 다.

- ⑥ (생략)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 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 1. (생략)
-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u>기술</u> 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 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u>과학기</u>
술직렬 6급
<u>.</u>
⑥ (현행과 같음)
⑦
1. (현행과 같음)
2
<u>과학</u>
기술직렬 5급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생 략)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 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 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 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 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 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 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 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 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 자를 결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제39소의2(중신시험의 방법)	\bigcirc
(현행과 같음)	
②	
과학	기술
직렬 6급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 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										
										- —
										- —
										_
										_
										-
			- . .	다민	<u>}</u> ,	다유	<u> </u>	각	호	의
어느	=_	하ι	구에	ੋਂ	개당	-하	는	경	우	케
<u>는</u>	해	당	ই	.에 /	너	정	하는	=	때	케
<u>ユ</u>	정	원여	(د	叫	己	있	느	것	<u>o</u> :	로
上ご	고 :	결원	길을	보	충	할	수	있	다.	

-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정

 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

 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

 위해제를 한 때
-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⑤ (생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 · 직위 또는 상당 계 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해당한다.

2. (생 략) 제63조(휴직)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지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지을 명하여야 한다.

1		3.	(생	략)
1.	\sim	≺ .	(^!	4
Ι.		.).	\ \	-

2.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u>				
· 1 ~ 3 (혀해과 간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 게 되었을 때

5. ~ 7. (생략)

③ ~ ⑤ (생 략)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4. <u>8세</u>	 	

- 5. ~ 7.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 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